

2010농산물 안전성 관리 어떻게 하나?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유통·판매단계까지 조사범위 확대

그 동안 생산단계(친환경인증농산물, 전통식품 등은 유통단계 까지)위주의 농산물 안전성조사만 담당하던 것을 대형매장 등 농산물의 유통·판매단계까지 안전성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조사대상 유해물질도 종전 4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확대되었다.

100년의 농산물품질관리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 영 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GAP제도의 운용, GMO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벼, 보리 등 각종 농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농가의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농정수행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 농식품안전관련 업무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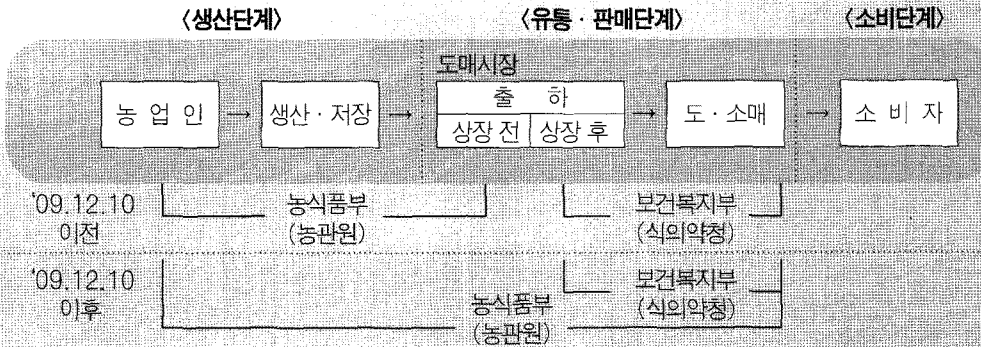
최근 국내에서는 멜라민 사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러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산물의 생산, 저장 및 출하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고, 부적합품의 시중유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의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부터는 그 동안 생산단계(친환경인증농산물, 전통식품 등은 유통단계 까지)위주의 농산물 안전성조사만 담당하던 것을, 농

■ 단계별 조사범위



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대형매장 등 농산물의 유통·판매단계까지 안전성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조사대상 유해물질도 종전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4개 분류에서 방사능, 다이옥신, 항생물질이 추가되어 7개 분류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안전성조사 계획물량을 지난해 57천 건보다 13%가 많은 64천 건으로 늘리고 국내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 160품목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잔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생산량이 많거나 다소비·다빈도 54개 품목을 기본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크게 문제가 되었던 농식품의 안전성 사고는 대부분 안전기준이 미처 설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물질에 오염된 경우가(멜라민 사건 등) 많았다. 이에 국내외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문제되는 유해물질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의 9개 지원과 시험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정보 수집관리팀」을

운영 중에 있다.

**범위 확대에 일관성 있게 추진**

그 동안 생산단계부터 출하 전 단계까지 실시하던 안전성조사 업무 범위가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으로 금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확대되어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유통·판매단계 조사 도입 초반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지도·홍보 위주로 조사하고 점차 조사를 강화 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해당 행정기관과 생산지에 통보하여 부적합이 반복되지 않도록 Feed Back 기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유통·판매단계 조사대상은 생산단계와 같이 160품목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과 유통·판매를 연계·관리하고,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 중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해당 업소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잔류조사’ 시행 계획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유해물질 잔류실태를 조사하는 국가잔류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농무부(USDA)에서 실시하는 PDP와 EU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잔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부적합이 발생하는 품목 위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특정한 유해물질이나 식품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잔류조사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12월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 중 유해물질 잔류 범위가 전국적이며 광범위하고 국민 관심이 많은 잔류농약에 대해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로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잔류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객관적인 통계, 지표 등을 활용함과 동시에 숙련도 평가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한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농산물 안전성 향상의 토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운영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 등으로 안전성 조사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시설·장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안전성 검사기관의 분석 능력 등을 지정기준에 따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능력평가를 실시하는 하는 한편, 안전성검사를 위한 예약, 시료접수, 유해물질 분석, 분석결과 통보, 조치결과 입력 등 일련의 과정을 정보관리시스템(SafeQ)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농관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 스스로가 이 약속을 잘 이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신뢰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Y